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화재나 사고 등이 반복되는 결함 자동차에 대해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운행 제한 시 자동차제작자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950호, 2020.2.4. 공포, 2021.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소비자 보호대책에 포함할 내용, 결함 정의 및 자동차 사고조사 대상이 되는 범위 등을 정하는 한편,

결함 조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기한 및 조사에 사용된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비용 지급 등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행제한에 따른 소유자 보호대책 마련(안 제23조의3 신설)

- 운행제한 사유·대상·기간, 미이행 시 자동차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소유자 불편 해소 방안 등을 포함한 소비자 보호 대책을 15일 이내 마련하도록 규정

나. 안전 결함 구체화(안 제41조제1항)

- 다수의 동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자동차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부상 또는 사망 등의 인명 피해 사

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결함으로 구체화

다. 결함조사 통보 및 자료제출 절차(안 제41조의3, 제41조의4)

- 성능시험대행자는 제작결함조사 지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작자등에게 조사대상, 배경, 내용 등을 통보하도록 규정
- 제작자등은 결함조사를 통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협의하여 결함조사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완화

라. 시정조치 재공개 기준 및 절차(안 제43조제5항 및 제6항)

- 결함시정 재공개는 시정조치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 시정율이 70% 미만으로 신속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명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 명령을 받은 경우 제작자등은 30일 이내에 자동차소유자에게 우편등으로 재통지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규정

마. 자동차 결함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안 제44조)

-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비자 불만 신고, 자동차 사고, 자기인증 위반사항 및 제작결함에 관한 정보와 결함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도록 규정

바. 자동차 사고조사 대상 및 절차 등 규정(안 제45조의4 신설)

- 자동차 화재사고,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발생한 사고, 기타 경찰청 또는 소방청에서 조사를 요구하는 사고 등을 조사대상으로 규정하고

- 성능시험대행자가 조사를 위해 자동차 등을 대여 받거나 매입하는 경우 자동차소유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대여 및 매입비 등은 보험업법 등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토록 규정
- 사. 제작자등의 자료제출 절차(안 제52조제5항)
-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사고 조사 등을 위해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제작자등은 요구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와 협의하여 조사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완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소유자 보호대책)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
이나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운행 제한을 명한 경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된 자동차 소유자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자동차 소유자
에게 우편발송 및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세지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운행제한 사유, 대상, 기간 및 제작사 연락처
2. 운행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자동차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3. 운행제한에 따른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 해소 방안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운행제한 명령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통지 절차·양식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 부분 중 “제41조의3. 제42조, 제43조”를 “제41조의3, 제41조의4,
제42조, 제43조, 제44조”로 하고, “제50조 및 제51조”를 “제50조, 제51조

및 제52조”로 한다.

제40조제2항제1호 중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란 다수의 동종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인명 피해 사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결함을 말한다.

제41조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제3호”를 “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41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작결함조사 지시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조사대상·내용 및 기간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과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41조의3제2항에 따른 제작결함조사를 통보 받은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작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제출기한 만료일의 전일까지 그 사유 등을 제출한 때에는 성능시험대행자가 한 차례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성능시험대행자는 제출 자료의 난이도 등이 높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작결함조사 계획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결함조사를 위해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자동차 또는 부품의 제공을 명한 경우 해당 자동차 또는 부품의 소비자 공급가격 또는 대여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시험대행자가 제작결함조사를 위해 제공 받은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가 관련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법 제31조제9항에 따라 적정성 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내용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제작결함 시정조치계획의 적정성 조사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른 자동차에 동일한 결함 장치나 부품의 장착 여부
2. 시정대상 자동차의 대수 및 시정대책의 적정성 여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제작결함 시정조치계획의 적정성 조사결과 시정조치계획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작결함조사를 종료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작자 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제41조제1항 및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를 다시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시정조치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 시정조치율 또는 경제적 보상율이 70% 미만으로 공중의 안전을 위해 시정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운행제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결함으로 시정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소유자 등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재통지하여야 한다.

제4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성능시험대행자는”으로, “시·도지사, 성능시험대행자”를 “시·도지사”로 한다.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법 제33조의4에 따른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비자 불만 신고, 자동차 사고, 자기인증 위반사항 및 제작 결함에 관한 정보와 결함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이하 “결함정보”라 한다)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관리·분석하여야 한다.

제45조의4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4(자동차 사고조사) ① 법 제31조의3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사고를 말한다.

1. 제44조에 따라 수집된 차량 화재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한 자동차 사고
2. 자동차 구조 및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발생한 사고
3. 경찰청 또는 소방청 등 관계기관에서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합동조사를 요청한 자동차 사고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

②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위해 자동차소유자 등이 자동차 또는 부품의 보존, 대여 또는 매입 요청에 응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별지 제26호의8서식의 자동차 또는 부품 매매, 대여, 보존 동의서 및 별지 제26호의9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③ 성능시험대행자는 사고조사를 위해 자동차 또는 부품을 보존, 대여 또는 매입한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를 제공하거나 대가를 산정하여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보존 또는 대여하는 경우 : 해당기간 동안 동급의 자동차를 제공하거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
2. 매입하는 경우 :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요율기관에서 책정한 차량가액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금액 또는 「보험업

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사가 차량을 매각하는 비용을 지급.
다만, 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의 요청에 응한 자와 협의한 금액
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협의 금액을 지급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52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성능시험대
행자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
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제출기한
만료일의 전일까지 그 사유 등을 제출한 때에는 성능시험대행자는 한
차례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성능시험대행자는 제출 자료의 난이도
등이 높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 계획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별지 제26호의8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6호의9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합사실 재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6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작결함을 공개하고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사항

-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3에 따른 자동차 사고 및 화재조사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자동차 화재 및 사고 조사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소방청, 경찰청, 보험회사, 보험요율산출기관 등 유관기관이 보유한 자료 제공 요청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7자리]		자동차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 개인정보 보유기간 :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3에 따른 자동차 사고 및 화재조사 완료시 까지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3에 따른 자동차 사고 및 화재조사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받는자 :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소방청, 보험회사, 보험요율산출기관 등 유관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사고 및 화재 영상, 사고 및 화재조사보고서 등 자동차 및 화재조사 관련 관계기관 보유 자료 제공 요청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성별 7자리), 자동차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성능시험대행자의 요청자료 제공 완료시까지(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 귀하는 상기 1~2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3에 따른 자동차 및 화재조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1. 수집·이용	2. 제공	서명
	☐ 소유자 ☐ 운전자 ☐ 직계 존·비속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23조의3(소유자 보호대책) ①</u> <u>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제작자등이나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운행 제한을 명한 경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동차 소유자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발송 및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세지로 통지하여야 한다.</u> <u>1. 운행제한 사유, 대상, 기간 및 제작사 연락처</u> <u>2. 운행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자동차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u> <u>3. 운행제한에 따른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 해소 방안</u> <u>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운행제한 명령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u>② 제1항에 따른 통지 절차·양식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국</u>

	<u>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u> <u>다.</u>
제31조(자기인증 기준) 자동차(미 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2조부 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8 조, 제39조, 제39조의2부터 제39 조의5까지,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0조의12, 제41조, 제41조의2, <u>제41조의3</u> , 제42조, <u>제43조</u> ,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49조 의2, 제49조의3, 제49조의5, <u>제</u> <u>50조 및 제51조에서</u> 같다)를 제 작·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 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 한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 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기 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31조(자기인증 기준) ----- ----- ----- ----- ----- ----- ----- <u>제41조의3, 제41조의4.</u> ----- <u>제43조, 제44조,</u> ----- ----- ----- <u>제50조,</u> <u>제51조 및 제52조에서</u> ----- ----- ----- ----- ----- ----- ----- -----
제40조(자기인증적합조사 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성능시험대행자가 제1항에	제40조(자기인증적합조사 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따라 수립하는 연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정보 수집·분석 결과

2.·3. (생략)

③ (생략)

제41조(제작결함의 시정)

<신설>

① (생략)

② 제작결함을 시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기간 내에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제작결함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받은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지체없이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1항에 따른 -----

2.·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41조(제작결함의 시정)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결함”이란 다수의 동종 자
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에 공통
적으로 존재하는 설계, 제조 또
는 성능상의 문제로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인명 피해 사고를 초
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결함을 말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2항제3호에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공고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통지 및 공고절차·양식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1조의3(제작결합의 조사) ① (생략)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결합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조사대상·내용 및 기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41조의4(제작결합조사의 시행)

① (생략)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작결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

④ -----

----- 제2항 및 제3항에 -----

---.

⑤ 제2항의 -----

---.

제41조의3(제작결합의 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작결합조사 지시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조사대상·내용 및 기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41조의4(제작결합조사의 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41조의3제2항에 따른 제작결합조사를 통보 받은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1조 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

으며,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자료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생 략)

<신 설>

터 15일 이내에 제작결합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제출기한 만료일의 전일까지 그 사유 등을 제출한 때에는 성능시험대행자가 한 차례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성능시험대행자는 제출 자료의 난이도 등이 높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작결합조사 계획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결합조사를 위해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에게 자동차 또는 부품의 제공을 명한 경우 해당 자동차 또는 부품의 소비자 공급가격 또는 대여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시험대행자가 제작결합조사를 위해 제공 받은

제42조(제작결합조사 결과보고)

①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제작결합조사 중 제작결합을 스스로 인정하고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계획을 보고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시정조치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제작결합조사를 종료하게 할 수 있다.

<신설>

제43조(시정조치 계획의 보고 등)

① ~ ③ (생략)

④ 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이 완료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가 관련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2조(제작결합조사 결과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법 제31조제9항에 따라 적정성 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내용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제작결합시정조치계획의 적정성 조사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른 자동차에 동일한 결합장치나 부품의 장착 여부

2. 시정대상 자동차의 대수 및 시정대책의 적정성 여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제작결합 시정조치계획의 적정성 조사결과 시정조치계획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작결합조사를 종료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시정조치 계획의 보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제31조제8항에-----

될 때까지 매 분기마다 분기종료 후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의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정조치율 또는 경제적 보상율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1조제1항 및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다시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 설>

---- <후단 삭제>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제41조제1항 및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를 다시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시정조치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 시정조치율 또는 경제적 보상율이 70% 미만으로 공중의 안전을 위해 시정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운행제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결함으로

<신 설>

⑤ (생 략)

제44조(제작결합정보수집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기인증적
합조사 및 제작결합조사에 필요
한 정보(이하 "결합정보"라 한
다)를 수집하기 위하여 결합정
보전산망을 설치·운영하거나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성능시
험대행자는 결합정보수집용 전
용전화·결합정보전산망 및 소
비자 불만 신고서 등의 방법으
로 결합정보 및 자기인증위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관리·분석하여

시정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필
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자동차소유자 등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
시지로 재통지하여야 한다.

⑦ (현행과 같음)

제44조(제작결합정보수집 등)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법 제33조의
4에 따른 자동차결합정보시스
템을 이용하여 소비자 불만 신
고, 자동차 사고, 자기인증 위반
사항 및 제작결합에 관한 정보
와 결합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
(이하 "결합정보"라 한다)를 수
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관리·
분석하여야 한다.

<삭 제>

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결함정보 수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도지사, 성능시험대행자,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조합 연합회 및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연합회,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 대하여 제작결함의 내용 및 원인 등을 포함한 제작결함의 발생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생략)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성능시험대행자는 -----

--- 시·도지사-----

-----.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의4(자동차 사고조사) ①

법 제31조의3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사고를 말한다.

1. 제44조에 따라 수집된 차량 화재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한 자동차 사고

2. 자동차 구조 및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발생한 사고

3. 경찰청 또는 소방청 등 관계
기관에서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합동조사를 요청한 자동차 사
고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

②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위해 자동차소유자
등이 자동차 또는 부품을 보존,
대여 또는 매입 요청에 응한 경
우 성능시험대행자는 별지 제26
호의8서식의 자동차 또는 부품
의 매매, 대여, 보존 및 개인정
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③ 성능시험대행자는 사고조사
를 위해 자동차 또는 부품의 보
존, 대여 또는 매입한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를
제공하거나 대가를 산정하여 비
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보존 또는 대여하는 경우 :
해당기간 동안 동급의 자동차
를 제공하거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

제50조(자료의 제공) ①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구매자에게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부품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공고하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③ (생략)

제52조(자료의 제출) ① ~ ④ (생략)

<신설>

2. 매입하는 경우 :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요율 기관에서 책정한 차량가액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금액 또는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사가 차량을 매각하는 비용을 지급. 다만, 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의 요청에 응한 자와 협의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협의 금액을 지급

제50조(자료의 제공) ① -----

----- 제5항

에 -----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52조(자료의 제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성능

<신 설>

시험대행자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 이내
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
이한 사유가 있어 제출기한 만
료일의 전일까지 그 사유 등을
제출한 때에는 성능시험대행자
는 한 차례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성
능시험대행자는 제출 자료의 난
이도 등이 높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조사 계획에 지장을 주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출기한
을 연장할 수 있다.